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19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소득월액 산정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일시금 제외	3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0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1.
- (3) 회 부 일 : 2024.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임.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하였음.

현행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약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 취지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득월액 산정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일시금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1)에 따른 기타소득(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1조(소득월액) ①·② (생략)	제71조(소득월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이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점토의견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이른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²⁾, 가입대상은 소기업³⁾ 및 소상공인⁴⁾의 대표자임.

□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②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업 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퇴임, 노령, 재난, 질병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며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서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간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⁶⁾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개요 >

1. 제도 개요

- 목 적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2007.09 제도출범
- 법적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제121조
- 법정명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브랜드명 : 노란우산)
- 제도운영 : 중소기업중앙회

2. 주요 특징

- 가입대상 : 사업을 운영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
- 부금월액 : 월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 분기납 한도 300만원
- 납입방법 : 월납, 분기납(3개월납)
- 납부기간 : 공제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 발생시까지

공제 사유	분기별 이율(24.2분기 기준)
폐업·사망	3.3% (기준이율+0.3%)
퇴임(질병·부상)	3.0% (기준이율)
노령(60세 이상&10년납)	

3. 주요 연혁

- '07. 9 노란우산 출범
- '15. 1 누적가입자 50만명 달성
- '17. 1 소득공제 한도 확대(300만원→최대 500만원)
- '17. 6 누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 '24. 6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희생파산)

4. 가입자 혜택

- 부금 전액은 연 복리이율로 적립하여 공제금 지급
- 납입 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
- 부금한도 내 공제계약대출 가능
- 단체상해보험, 심리상담, 재기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전국 17개 지자체 장려금 지급(12만원 ~ 36만원)

<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 >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82.5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300만원	16.5%~38.5%	49.5~115.5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99만원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7)에서 공제금을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므로, 공제사유 발생에 따라 지급받은 공제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⁸⁾⁹⁾

7)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법 제86조의3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8)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text{연간 보수 외 소득} -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times 1/12$$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 그러나 공제사유가 미발생한 상태에서 중도에 임의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서 해지로 인한 환급일시금(이하 “해지일시금”) 중 기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소득월액 산정 시 기타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지일시금 중 기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생활자금 사용 및 사업운영자금 사용 등의 사유로 임의해지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바¹¹⁾,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 경영애로 등에 따라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저축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제도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임의해약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9) 보건복지부는 퇴직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시 퇴직소득의 경우 일회성 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부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지자대상 설문조사(2023.11월)에 따르면 해지증가 주요 원인은 생활자금사용(38.6%) > 사업운영자금(38.3%) > 금융기관대출상환(10.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²⁾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현황>

연도	해약건수(건)	증감률(%)
2020	30,218	-6%
2021	30,952	2%
2022	44,295	30%
2023	71,461	61.3%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노란우산공제 일시해지금)¹³⁾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임의해지에 따른 반환금 중 기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제 가입 후 중도 해지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일정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중도에 임의

12) 프레시안, 소상공인의 보루 '노란우산공제' 해약시 건보료 7% 추가징수 '불합리', 2024. 8. 21.자 기사

1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해지하여 해지일시금을 받는 경우 당초 소득공제를 받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금액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임의해지는 공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해지 외에도 가입자의 다양한 해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바, 해지일시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부과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에 공감하나,
- 폐업 단계에 이르기 전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일시적 경영 애로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4. 6. 1.부터 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된 점, 임의해지란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변심 등 여러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바 임의해지를 경제적 어려움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해지일시금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가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시금 전체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득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중소기업중앙회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주로 상금, 포상금, 위약금 등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공제사유 발생 이전에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일시적 경영애로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제도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